

10.23. 시행 “긴급수급조정조치” 주요사항 안내

- 수출총량제, 사전승인제 폐지 등-

- ✓ 마스크 생산량 증가 및 수급 안정화에 따라 마스크 수출규제 및 판매업체의 판매량 신고 등 의무 폐지
- ✓ 시행일 : 2020년10월23일

1 수출규제 폐지

-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50% 이내의 수출을 허용하는 **규정 삭제**
 - **의약품 마스크(보건용, 수술용, 비말차단용) 종류, 수출주체, 수량에 상관없이 수출 가능(10.23.~)**

2 판매 물량 판매 신고·승인 폐지

-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3천개 이상 판매시 사후신고, 20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**의무 삭제**

3 생산실적 등 신고 유지

- 당일 생산실적 등은 종전과 같이 다음날 낮 12시까지 매일 신고(**주말 포함**)

【생산실적 등 신고】

- (신고대상)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한 생산량, 수출량, 국내 출고량, 재고량 등
- (신고 방법) 당일 생산실적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'의약품안전나라(<http://nedrug.mfds.go.kr>)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'으로 신고

[예시] 10월 25일 생산 또는 판매한 실적 ⇒ 10월 26일 낮 12시까지 신고

- (당일 생산량 산정기준) 당일 0시부터 23시59분까지 생산한 수량
 - 1일 생산량은 주문자 생산분(OEM) 등을 포함한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전체 마스크 수량으로 산정

【생산 전망 신고】

- (신고대상) 마스크 생산업자의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
- (신고 방법)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을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'의약품안전나라(<http://nedrug.mfds.go.kr>)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'으로 신고

4 기타 사항

□ (고시 시행일) 2020. 10. 23.

□ (고시 유효기한) 2020. 12. 11.

※ 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」 고시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행정규칙란에서 검색 가능

* 고시 내용 관련 문의처: 식약처 마스크총괄반(☎ 043-719-3402~6, 3712~4)

* 생산실적 등 신고 관련 문의처: 식약처 코로나19긴급대응반(☎ 043-719-1492~8)

<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내용 요약 >

구 분	현 행	개편 후
① 생산업자 규제	생산량 등 사후신고	현행 유지
② 판매업자 규제	판매량 사후신고	폐지
	대규모 물량 사전승인	폐지
③ 수출규제	수출총량제	폐지